

2023년도 한국연구재단

공무직(미화·경비·운전직) 채용 공고

NCS 기반 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 일반경쟁채용

「한국연구재단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국가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아울러 재단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채용규모) 총 7명 이내

구분	미화직		경비직		운전직	합계
	대전	서울	대전	서울	대전	
채용인원	2명	1명	1명	2명	1명	7명

○ 지원범위

- ★ 연구직 및 공무직 전 채용 분야 중 1개 세부 지원분야만 선택 지원 가능 → 이중(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분야 선택 후 변경 불가
- ※ 이중지원 후 적발 시, 지원분야 모두 탈락 조치

○ 지원분야 선택은 지원자의 전공과는 무관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요건 및 전문지식, 업무수행 보유 능력에 따라 선택

□ 지원자격

○ 해당분야 직무기술서상의 직무역량을 보유하고, '24. 3. 11.(월)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구분	인원	자격요건
미화직	대전 2	▶ 청사 시설 외곽 청소, 위생 등 주변 환경 정비 및 환경미화 관련 장비/용품 관리가 가능한 신체건강한 사람 ▶ 청소장비 운용 및 고중량 폐기물 운반 가능자 포함
	서울 1	

★ [공무직(미화직) 공통사항]

- ㉓ 나이제한 없음. 단, 재단 정년을 고려하여 65세(입사일 기준) 미만인 사람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만 지원가능, 병역법 제76조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㉔ 지원 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전 채용 분야에서 세부 1개 분야만 지원이 가능하며, 이후 지원분야 변경은 불가(이중지원 적발 시, 지원분야 모두 탈락)
- ㉕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6:30~15:30) 근무가 가능한 사람
※ 휴게시간 1시간

구분	인원	자격요건
경비직	대전 1	▶ 경비구역에 대한 인력 및 차량 등의 출입통제 업무 등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사람
	서울 2	

★ [공무직(경비직) 공통사항]

- ㉓ 나이제한 없음. 단, 재단 정년을 고려하여 65세(입사일 기준) 미만인 사람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만 지원가능, 병역법 제76조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㉔ 지원 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전 채용 분야에서 세부 1개 분야만 지원이 가능하며, 이후 지원분야 변경은 불가(이중지원 적발 시, 지원분야 모두 탈락)
- ㉕ (근무시간)
 - (대전) 감시·단속적 근로형태, 3교대(주간/야간/비번) 근무가 가능한 사람
 - (서울) 감시·단속적 근로형태, 3교대(주간/야간/비번) 근무 또는 주간근무(08:30~18:30)가 가능한 사람
 - ※ (공통)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근무시간 및 형태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인원	자격요건
운전직	대전 1	▶ 차량의 안전상태 확인 및 차량운행 법규를 준수하면서 차량운행이 가능한 자 ▶ 1종 대형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 및 대형버스 운전경력자 ▶ 운전경력증명서상 무사고(최근 5년)

★ [공무직(운전직) 공통사항]

- ㉓ 나이제한 없음. 단, 재단 정년을 고려하여 61세(입사일 기준) 미만인 사람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만 지원가능)
- ㉔ 지원 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전 채용 분야에서 세부 1개 분야만 지원이 가능하며, 이후 지원분야 변경은 불가(이중지원 적발 시, 지원분야 모두 탈락)
- ㉕ (근무시간) 감시·단속적 근로형태

□ 결격사유

○ 재단 내규 「인사규정」 제9조에 해당되는 사람

구분	인원	자격요건
제9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14.9.29., '17.6.16., '18.7.5.)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5. 신체검사 결과 이사가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재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② 채용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사람은 불합격 처리하며, 임용 후에 발견된 사람은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8.7.5.)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14.9.29., '17.6.16., '18.7.5.)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5. 신체검사 결과 이사가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 6. 재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② 채용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사람은 불합격 처리하며, 임용 후에 발견된 사람은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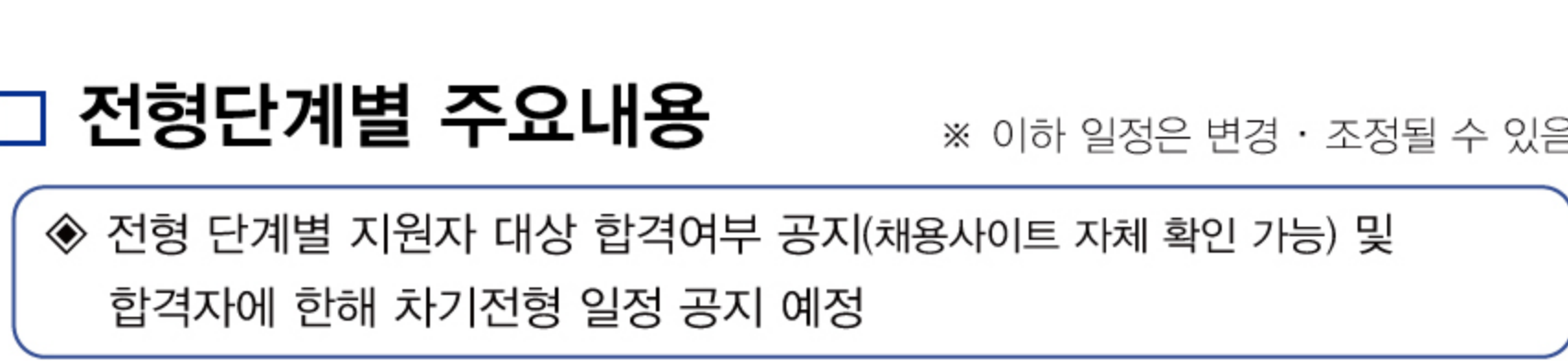
□ 채용방법

○ 분야별 지원 및 경쟁 후 평가결과에 따라 채용 등

□ 직무소개

○ NCS 기반 공무직(미화직·경비직·운전직) 직무기술서 참조

□ 전형절차



□ 전형단계별 주요내용

※ 이하 일정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 전형 단계별 지원자 대상 합격여부 공지(채용사이트 자체 확인 가능) 및 합격자에 한해 차기전형 일정 공지 예정

- ① (공고/접수) '23. 12. 8. (금) ~ '24. 1. 2. (화) 18:00까지 ※ 26일 공고(초일산입)
- ② (서류전형) '24. 1. 15. (월) 예정
- (서류전형 결과 발표) '24. 1. 31. (수) 예정
- ③ (면접전형) '24. 2. 6. (화) ~ '24. 2. 8. (목) 예정 ※ 추후 확정일자 공지
- (전형 방법) 개별 또는 조별 면접
- ④ (최종 합격자 발표) '24. 2. 23. (금) 예정
- ⑤ (입사 예정일) '24. 3. 11. (월)

□ 고용형태

○ 입단일 기준 공무직(미화직·경비직·운전직) 정규직 임용

□ 처우

구분	미화직	경비직	운전직	비고
월 급여(기본급)	2,055,203원	2,055,203원	2,260,724원	성과급 별도 지급

- ※ 신규 채용된 직무단계는 동일 1단계 부여(별도 경력산정 없음)
- ※ 상기 직무단계별 기본급 기준은 최저수당 인상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법정수당(연차미사용수당 등) 및 가족수당은 해당 시, 별도 지급

□ (근무지) 재단 대전본원 및 서울청사

○ 공고문에 명시된 근무지에 배치

□ 제출서류

○ 최종 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가점 증명서류* 제출목록 및 제출 방법 등 별도 공지
* (가점증명)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가점 증명자료

○ 추가 제출서류 필요 시,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목록 및 제출방법 등 별도 공지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3. 12. 8. (금) ~ '24. 1. 2. (화) 18:00 까지
- (접수서류) 입사지원서(직무능력기술서), 자기소개서*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작성 시,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및 노출 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접 수 처) 인터넷 접수 → <https://nrf02.plusrecruit.co.kr/#/>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으며,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 지원자 폭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사전에 지원서 제출 요망

□ 기타 행정사항

○ 국가유공자(보훈),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 재단 체형형 인턴 우수인턴 지정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우대
※ 국가유공자의 경우 관련법(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법정가점이 합격하는 자는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종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의 경우 법정가점 미부여함

○ 각 전형 단계별 과락(탈락) 조치

구분	자격요건
1 서류전형	▶ (공통) 전형 결과 60점 미만(가점 불포함) 시, 탈락 조치
2 면접전형	

○ 서류전형에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에게 차기 전형단계 기회 부여

○ 최종합격(접수)에서 동점자 발생 시, ① 국가유공자, ② 장애인, ③ 비수도권 지역인재, ④ 저소득층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 상기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 서류전형의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결정
※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 평가항목 중 ③ 문항(직업윤리) → ① 문항(지원동기) → ② 문항(대인관계) 고득점 順으로 동점자 석차 산정

○ 분야별 지원자 중 채용 대상자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서 미채용 가능

○ 응시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부담으로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 허위(진위 확인 예정)로 판명될 경우, 임용 후라도 합격을 취소

- 온라인 접수 시, 본인의 고의 및 과실 또는 착오로 가점* 여부를 오기재 (또는 오선택)하여 증명확인이 불가할 경우, 차기전형 기회 미부여
* 국가유공자(보훈),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 재단 체형형 인턴 우수인턴 지정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 구비서류 등에 중대한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또는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 전형결과를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 간 응시를 제한
- 전형 중 부정행위는 전형단계별 무효처리하며, 임용 후 적발되는 경우 탈락 처리

◆ (부정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또는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합격 및 근로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기준을 준수하며,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수행 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참고자료로 미활용
- 각 전형단계 시, 재단 내 4층 이내 친족 근무여부 확인서 및 부정합격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한 확인서 징구 가능

○ 재단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인사청탁을 받지 않으며, 청탁·압력·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 적발 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람에 대해 합격취소, 징계,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 채용 과정에 감사업무 담당자가 참여하고, 채용 관련 문서 일체는 영구 보관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 기초 유지

○ 코로나(19) 등 확산 시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전형일정 등은 변경(순연 또는 잠정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 누리집(www.nrf.re.kr), 채용사이트 등 공지 예정

○ 최종 합격자의 입사포기, 임용 결격사유 등에 따른 예비합격자 제도 한시적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채용서류 반환 요구 가능(단, 온라인 접수서류는 해당사항 없음)

○ 채용인원 및 단계별 전형내용, 일정은 재단의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상에 개인 인적정보(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사진 등) 관련 일체 기재 또는 부차 금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관련 세부 정보는 고용노동부 관련 누리집(www.ncs.go.kr) 참조

○ 재단 관련 정보는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 참조

○ 입사지원서 내 경력사항 이외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경력 및 경험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 후라도 합격 취소 예정

○ (이익제기) 최종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
* (예외)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사유에 준하는 경우 등

참고 관련 법령 및 시행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